

1. 개정이유

국가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업무의 범위를 정립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일부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된 관리대상자원을 신규 반영하며, 소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개정)

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 5. 4. ~ 6. 15., 특기할 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자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관리대상업체는”을 “관리대상자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살충제 제조업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촉매제 제조업자(요소수)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체, 전기공사업체, 핵연료 생산업체

제3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중점관리대상업체를”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을”로 한

다.

제4조의 제목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를”을 “중점관리대상자원을”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지정폐기물”을 “지정·의료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6. 제2조제6호에 따른 살충제 제조업자
7.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핵연료 생산업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법 제3조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국가중요시설에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가 접근 및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탐지·퇴치·추락·포획하는 등 자체방호에 필요한 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하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u> <u>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비상대 비자원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u>비 상대비자원 관리법</u>」(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u>관리대상업체</u>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u>「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u> <u>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비상대 비에 관한 법률</u>」 ----- ----- ----- ----- -----. 제2조(관리대상자원의 범위) 「<u>비 상대비에 관한 법률</u>」 ----- ----- ----- ----- <u>관리대상자원</u> 은 -----. 1. ~ 5. (현행과 같음) 6.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u>제13조에 따른 살충제 제조업 자</u> 7. 「<u>대기환경보전법</u>」 <u>제74조 에 따른 축매제 제조업자(요 소수)</u>

<u><신 설></u>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체, 전기공사업체, 핵연료 생산업체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중점관 리대상업체</u> 를 대상으로 매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회 실시한다.	제3조(자원조사)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u>중점관 리대상자원을</u> ----- ----- -----.
제4조(<u>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u>)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u>중점관리대상 업체</u> 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 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 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제4조(<u>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u>) ----- ----- ----- ----- ----- ----- <u>중점관리대상 자원을</u> ----- ----- ----- ----- -----.

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 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u>중점관리대상업체</u> 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조의2(권한의 위임) ----- ----- ----- --- <u>중점관리대상자원</u> ----- ----- ----- -----.
<u><신 설></u>	1. 제2조제1호에 따른 먹는샘물 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 조업자
1. (생 략)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 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 제1호와 같음) <u><삭 제></u>
<u><신 설></u>	3.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 리업자(지정·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3. 4. (생 략)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u><신 설></u>	6. 제2조제6호에 따른 살충제 제조업자
<u><신 설></u>	7.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사업 자, 전기공사업자, 핵연료 생

<신 설>	산업자 제8조(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 보안 및 방호) 법 제3조에 따 라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에서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관의 국가중요시설에 비 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접근 및 침입한 경 우 해당 비행장치를 탐지·퇴치 · 추락·포획하는 등 자체방호 에 필요한 조치 계획을 작성하 고 실시하여야 한다.
--------------------	--